한국청소년연구 제21호 1995 여름

범죄와 형벌에 관한 청소년 의식 조사연구*

이 춘 화**

I. 서 론
II. 범죄개념에 관한 의식
III. 우리나라 범죄현황에 관한 의식
IV. 형벌의 본질에 관한 의식
V. 형벌의 한계에 관한 의식
VI. 결 론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는 끔찍하고 흉악한 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그러한 범죄 사건들은 매스컴을 통해 연일 생생하게 보도되고 있는데, 청소년들에 의한 비행이 날로 흉포화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그러한 범죄 보도에 따른 청소년들의 모방범죄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크다. 청소년문제라고 하면 의례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를 떠올릴 만큼 청소년들에 의한 비행이나 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학교 안이나 주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빼앗거나 폭력을 일삼는 청소년들의 사소한 비행도 끊이지 않고 있어, 그들의 비행문제 뿐 아니라 그들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학생청소년들의 범죄피해와 범죄에 대한 공포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청소년범죄는 1989년까지 증가하다가 1990년 이후 감소되고 있어 총범죄에 대한 청소년범죄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청소년백서,1993 : 431). 그러나 양적인 면에서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면에서 강력범의 비율이 높아 청소년범죄는 오히려 더욱 심각해 지고 있다고 하는 인식을 갖게 한다. 게다가 학생범죄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고, 학교 안이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비행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의 한 연구에

* 이 논문은 1994년도 연구과제인 「청소년육성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II)-청소년의 의식과 문화」중 "범죄와 형벌에 관한 청소년 의식 조사연구"를 요약한 것임.

**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원

의하면 학생들의 60%정도가 학교 주변에서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실제로 청소년들의 범죄피해율이 58.3%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김준호 외,1991 : 355~356),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이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범죄문제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어떠한 가치관과 태도 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청소년들이 범죄문제에 대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기존의 연구에서 청소년에 대한 의식조사는 수없이 이루어져 왔지만 정작 청소년 문제의 촛점이 되고 있는 범죄문제에 대한 의식 조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은 실정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몇몇 법의식 조사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 진 바는 있으나, 법의식 조사에 있어서의 법은 실정법규라기 보다는 오히려 법원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이수성,1984 : 69), 범죄에 관한 구체적인 형법규정이나 형벌제도 등에 관해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범죄와 형벌에 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의식을 알아 봄으로써 청소년들의 범죄문제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법감정 등 그들의 의식 전반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범죄와 형벌의 개념 및 범죄와 형벌에 관한 형법에서 일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몇가지 사안들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어떤 의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경험적인 자료를 통하여 알아봄으로써 현행 형법제도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로 삼는 동시에, 이들 청소년을 학생 남·여 및 소년원생 남·여 집단으로 나누어 그들 집단 간의 의식의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학생청소년과 비행청소년 또는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간에 어떤 의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아 각 집단에 대한 법교육제도의 개선책을 모색해 보고 또 청소년 비행의 예방대책을 수립하는데 보조자료로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이 연구는 청소년들이 범죄와 형벌에 관해 어떠한 의식[1]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 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의식조사의 대상 영역인 범죄와 형벌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범죄와 형벌은 좁은 의미의 형법인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와 형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형법학의 연구대상이 되는 넓은 의미의 형법인 모든 형사처벌규정이 포함되는 것이고, 또한 형사정책 및 범죄학의 연구대상이 되는 범죄 현상과 원인의 규명 및 대책 수립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범죄와 형벌에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 중에서 특히 논란의 여지가 있어 청소년들의 의식을 알아 볼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5가지 측면을 선정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범죄개념 및 범죄자에 대한 태도와 의식
2) 범죄의 원인 및 대책에 관한 의식
3) 우리나라의 범죄현황에 관한 의식
4) 형벌의 본질에 관한 의식

1) 여기에서 사용하는 의식이라는 용어는 가치관,태도,의견,법의식,법감정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5) 형벌의 한계에 관한 의식

이상과 같이 이 연구에서 알아 보고자 하는 내용들은 범죄학이나 형사정책 및 형법학에서 많은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어 학설의 대립이 있거나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어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선정된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지면이 제한되어 있어 이상의 내용중 상대적으로 집단간 의식차이가 많은 내용을 발췌하여 제시하였다.

3.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범죄와 형벌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조사대상인 표본에 대한 설문조사법을 통해 수행되었다. 조사대상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학생과 소년원생으로 학생집단은 성별(남 : 여), 교급별(중학생 : 고등학생)로 각각 100명씩 총 400명을 표집하였고, 소년원생집단은 남자소년원인 서울소년원의 원생 150명과 여자소년원인 안양소년원의 원생 86명을 의도적으로 표집하였다.

설문의 구성은 범죄개념 및 범죄자에 관한 질문 9문항, 범죄원인 및 대책에 관한 질문 20문항, 우리나라 범죄현황 및 범죄피해에 관한 질문 4문항, 형법상의 범죄에 관한 질문 75문항, 경범죄처벌법상의 범죄에 관한 질문 66문항, 형벌의 본질에 관한 질문 5문항, 형벌의 한계에 관한 질문 7문항,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 8문항으로 총 194문항으로 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들은 몇개의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5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먼저 국내외의 관련문헌[2]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작성한 후, 질문의 난이도를 청소년과의 면담을 통해 조정하고, 형법학자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수정 보완하여 완성하였다.

설문 조사는 학생의 경우 1994년 7월 4일부터 7월 15일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조사방법은 각 학교로 연구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설문지를 우편 발송하여 학교자체에서 학급단위로 실시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소년원생의 경우 1994년 8월 25일 연구원이 소년원을 방문하여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고 현장에서 회수하였다.

배포된 설문지는 학생 400부,소년원생 236부로 총 636부이고, 회수된 설문지는 학생 380부, 소년원생 236부로 총 616부였다. 그중 신뢰성이 낮다고 판정된 자료 16부를 제외한 600부에 대하여 SPSS/PC+(ver 3.0)를 사용하여 전산 처리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는 교차분석 *crosstabulation*과 변량분석(ANOVA)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표본의 특성

구분	남자	여자	계
학 생	186(31.0)	187(31.2)	373(62.2)
소년원생	148(24.7)	79(13.2)	227(37.8)
계	334(55.7)	266(44.3)	600(100.0)

이 연구는 조사 방법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조사 대상 지역이 서울 및 수도권으로 제한되어 있고, 조사대상자도 학생 및 소년원생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사의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의 의식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표본추출에 있어 모집단을 정확히 추정하

2) 특히, 박재윤(1992), 「교정공무원의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주로 참조하였다.

고 그에 따른 표본집단이 선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행청소년의 경우 그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데 있어 절차가 어려운 관계로 모집단과 표본집단간의 비율을 고려하지 못했고, 특히 여자원생의 경우 소년원이 수도권지역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전국에 여자소년원이 한곳 뿐이기 때문에 나머지 집단과 달리 대상지역의 형평이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표본추출의 한계를 고려하여 대상집단을 학생 남·여, 원생 남·여의 4개 집단으로 나누어 4개 집단을 각각 비교하였다. 그러므로 이 조사의 결과는 각각 남자학생,여자학생, 남자원생,여자원생으로서만 비교가 가능하고, 학생 대 원생의 비교나 성별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셋째, 소년원생의 경우 자신들의 비행행위와 설문에 제시되어 있는 범죄의 개념을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면 그들의 의식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 조사에서는 설문 문항을 학생용과 소년원생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구성하였으므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II. 범죄개념에 관한 의식

범죄에 관한 청소년의 의식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이 범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범죄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는 범죄를 보는 관점이나 학설에 따라 매우 상대적이다.

먼저 형식적 관점에서는 범죄를 형벌법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형벌이 과해지는 행위라고 본다. 즉, 제재적 효과 내지 특히 형벌을 과하는 행위가 범죄인 것이다. 형식적 의의 의 범죄를 그의 성립요건으로서 보면 그것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이다. 그러나 실질적 관점에서는 범죄는 국가에 따라서 보호하는 사회의 질서 이익 가치를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위해한 행위를 범죄라고 보는 것이다(夏目文雄,上野達彦, 1992 : 63~64).

한편 여러가지 학설에 따라서도 범죄를 보는 시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는 범죄의 개념을 사회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 의해 변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도 있다. 그러한 입장의 하나인 낙인론적 관점에서는 범죄를 사회변화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는 사회적 규정이라고 보고, 갈등론적 관점에서는 범죄를 계급적인 성질로 파악하여 계층간의 갈등의 소산이라고 본다(Liska, 1988 : 169,267).

이상과 같이 범죄의 개념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으나 그러한 행위들이 실정법상 범죄로 되어 처벌을 받으려면 형법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법익을 침해하는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만을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견해 뿐 아니라 양심에 비추어 나쁘다고 판단되는 행위까지도 범죄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 도덕주의적인 견해도 있다(박재윤,1992 : 45).

따라서 범죄 개념에 관한 청소년들의 의식은 이상의 다양한 견해들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응답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법을 어기는 행위를 범죄라고 보는 형식적인 범죄개념에 대한 의식의 평균은 총점5점에 대하여 남자학생집단이 4.17, 여자학생집단이 4.06, 남자소년원생집단이 4.04, 여자소년원생집단이 3.98이며, $F=1.08$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결과에 따르면, 네집단 모두 형식적인 범죄개념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으로 해를 미치는 행위를 범죄라고 보는

실질적인 범죄개념에 대한 의식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4.37, 여자학생집단이 4.43, 남자소년원생집단이 4.12, 여자소년원생집단이 3.83이며, F=12.70으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했다(P<.000).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원생-남/원생-여, 학생-남/원생-여, 학생-남/원생-남, 학생-여/원생-여, 학생-여/원생-남 집단간에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학생집단과 여자학생집단이 남자소년원생집단이나 여자소년원생집단에 비해 범죄의 개념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범죄를 개인의 양심에 비추어 나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것이라고 보는 도덕주의적인 범죄개념에 대한 의식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3.99, 여자학생집단이 4.03, 남자소년원생집단이 4.04, 여자소년원생집단이 3.86이며, F=.66으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네집단 모두 도덕주의적 범죄개념에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세가지 범죄개념에 관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응답자인 네개 집단은 대체로 형식적인 범죄개념뿐 아니라 실질적인 범죄개념에 동의하고 있으며, 동시에 법 정책적으로 비양심적인 행위까지도 범죄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자학생집단은 범죄를 사회적인 해악으로 보는 실질적인 범죄개념에 대해 가장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를 사회적인 규정이라고 보는 낙인론적 범죄개념에 대한 의식의 평균은 총점 5점에 대하여 남자학생집단이 3.23, 여자학생집단이 3.39, 남자소년원생집단이 3.66, 여자소년원생집단이 3.53이며, F=3.89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했다(P<.01).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생-남/원생-남 집단간에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남자소년원생집단이 가장 동의하고 있고, 다음으로 여자소년원생집단, 여자학생집단의 순이며, 남자학생집단이 가장 덜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집단간의 차이는 남자소년원생 및 여자소년원생의 경우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그들 자신의 행위도 현재 사회에서 범죄로 규정했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며 사회가 변한다면 잘못된 행위가 아닌 것으로 될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범죄를 계층간의 갈등이라고 보는 갈등론적 범죄개념에 대한 의식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2.62, 여자학생집단이 2.15, 남자소년원생집단이 3.21, 여자소년원생집단이 3.00이며, F=23.66으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매우 유의했다(P<.000).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생-남/학생-여, 원생-여/학생-여, 원생-여/학생-남, 원생-남/학생-여, 원생-남/학생-남 집단간에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남자소년원생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급적인 범죄개념에 대해 약간이나마 동의하고 있고, 여자소년원생집단은 그저 그렇다는 입장이며, 또한 남자학생집단은 동의하지 않고, 여자학생집단이 가장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집단간의 차이는 앞의 낙인론적 범죄 개념에 관한 의식에서처럼 원생집단이 학생집단에 비해 자신의 처지때문에 비관적인 범죄관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학생집단과 원생집단 내에서도 여성으로 구성된 집단과 남성으로 구성된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보수적

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Ⅲ. 우리나라 범죄현황에 관한 의식

오늘날 우리나라의 범죄 추세는 흉포화,지능화, 조직화,저연령화의 경향을 가지고 날로 심각함을 더해 가고 있다. 1991년 우리나라의 형법범의 수는 308,96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절도·살인·강도·강간·폭행·상해 등을 저지른 소위 강력범은 90,347명으로 전체 형법범의 29.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체 범죄자수에 대한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전체 형법범에 대해서는 10.6%이나, 강력범에 대해서는 30.6%를 차지하고 있어 소년범의 경우 성인범죄자에 비해 강력범죄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1993 : 241,통계자료 참조).

여기에서는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범죄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양적인 면, 질적인 면, 연령적인 면으로 구분하여 그 반응을 조사하였다. 우리나라 범죄현황의 양적인 측면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심각할 정도로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각 집단의 의식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3.95, 여자학생집단이 4.03, 남자소년원생집단이 3.80, 여자소년원생집단이 3.88이며, F=1.91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생-여/원생-남 집단간에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네집단 모두 우리나라 범죄문제의 양적인 심각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여자학생집단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범죄현황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범죄는 점점 흉악화되는 것이 문제이다"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각 집단의 의식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4.22, 여자학생집단이 4.55, 남자소년원생집단이 3.87, 여자소년원생집단이 4.02이며, F=19.99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매우 유의했다(P<.000).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생-남/원생-남, 학생-여/원생-남, 학생-여/원생-여, 학생-여/학생-남 집단간에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네집단 모두 우리나라 범죄현황의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양적인 문제에 대한 것보다도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정도에 있어서는 소년원생들보다는 학생들이, 학생중에서도 역시 여자학생집단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자학생집단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범죄현황의 연령적인 측면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성인범죄보다 청소년범죄가 더 심각하다"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각 집단의 의식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4.09, 여자학생집단이 3.95, 남자소년원생집단이 3.97, 여자소년원생집단이 4.11이며, F= .85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네집단 모두 청소년의 범죄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형벌의 본질에 관한 의식

형벌의 본질이 무엇인가하는 문제는 형벌의 목적과 기능에 관련된 것으로 형벌의 목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응보형주의와 목적형주의가 대립하고 있고, 형벌의 예방적 기능의 대상을

누구로 보는지에 따라 일방예방주의와 특별예방주의로 나뉘어 학설의 대립이 있다.

응보형주의는 형벌의 본질이 범죄의 결과로서 당연하게 가하게 되는 응보로서 응보의 내용은 해악 내지 고통이 있는 복수라기 보다는 도의적 요구에 기초하여 과해지는 법률적, 국가적인 제재라고 본다. 목적형주의는 형벌의 목적이 범죄에 대하여 사회를 방위·보전하는데에 있다고 하여 형벌이외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서 그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러한 목적형주의는 응보적 본능에 따라서 사회의 질서가 유지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정의의 실체를 개인과 사회의 조화에서 구하여, 형벌은 그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고, 또 범죄자를 개선하여 사회에로의 복귀·동화를 가능하다고 함에 따라서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의 보전을 행하는 것에 형벌의 본질이 있다고 한다(夏目文雄,上野達彦, 1992 : 9-19).

일반예방주의는 형벌의 대사회적 작용에 중점을 두어 범죄인에 대하여 형벌을 과함으로써 일반 사회인을 위하(威嚇), 경계(警戒)하여 장차 범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이라고 보는 것이다(진계호,1987 : 93-95). 특별예방주의는 범죄인 그 자체에 대한 형벌의 작용에 중점을 두어 범죄인 자신으로 하여금 다시 범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이라고 보는 것이다(정영석,1986 : 44).

현재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응보형주의의 입장에 서서 동시에 형벌의 교육적 개선적인 성질을 인정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형벌의 예방적 기능을 인정하는데 대하여도 이론이 없으며, 일반예방주의와 특별예방주의 양자에 대하여 병존을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형벌의 본질에 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상의 형벌론에 따라 응보형주의,특별예방주의 ,일반예방주의적 형벌관에 관한 문항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반응을 조사하였다.

형벌의 목적이 응보에 있다고 보는 응보적 형벌관에 대한 의식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4.09, 여자학생집단이 4.37, 남자소년원생집단이 3.55, 여자소년원생집단이 3.54이며, F=31.16으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매우 유의했다(P<.000).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생-남/원생-여, 학생-남/원생-남, 학생-여/원생-여, 학생=여/원생-남, 학생-여/학생-남 집단간에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형벌을 범죄의 대가로 보는 응보형론에 대해 네집단 모두 동의하고 있으나, 동의의 정도에 있어서는 소년원생 남·여에 비해 학생 남·여의 지지도가 더 높고, 학생중에서도 여자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의식의 차이를 볼 때, 여자학생집단의 형벌관이 가장 보수적임을 알 수 있다.

형벌의 목적이 범죄자의 개선에 있다고 보는 특별예방주의적 형벌관에 대한 의식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3.82, 여자학생집단이 3.66, 남자소년원생집단이 3.36, 여자소년원생집단이 3.34이며, F=6.37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매우 유의했다(P<.001).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생-여/원생-여, 학생-여/원생-남, 학생-남/원생-여, 학생-남/원생-남 집단간에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형벌이 범죄자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는 특별예방론에 대해 네집단 모두 동의하고 있으나, 동의의 정도에 있어서는 이 역시 소년원생 남·여에 비해 학생 남·녀의 지지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형벌의 목적이 일반사회인에 대한 위하(威嚇)

에 있다고 보는 일반예방주의적 형벌관에 대한 의식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3.70, 여자학생집단이 3.60, 남자소년원생집단이 3.34, 여자소년원생집단이 3.56이며, F=2.95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했다(P<.05).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생-여/원생-남, 학생-남/원생-남 집단간에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형벌이 일반사회인의 범죄 예방효과가 있다고 보는 일반예방론에 대해 네집단 모두 동의하고 있으나, 동의 의 정도에 있어서는 남자소년원생이 가장 낮고, 남자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소년원생들은 형식적인 관점에서 형벌의 법익박탈 기능의 측면을 중요시하고 있고, 학생들은 형벌의 형식적인 기능보다는 형벌의 실질적인 목적에 더욱 관심을 갖고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일반사회인에 대한 위하보다는 범죄자의 개선을, 범죄자의 개선보다는 응보에 대한 지지도가 더욱 높게 나타나므로써 학생집단의 형벌관이 매우 보수적임을 알 수 있다.

V. 형벌의 한계에 관한 의식

1. 탈윤리화에 관한 의식

형법은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형법은 형벌이라는 제재 수단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위험성을 언제나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형벌권의 사용은 책임원칙과 형벌필요성(김일수,1991 : 30)이라고 하는 기준 원칙에 따라 일정한 한계를 둘 필요가 있다.

형벌의 한계와 관련하여 가장 논쟁이 많은 것은 형법의 탈윤리화 문제로 법윤리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형법의 법익 보호 기능에는 사회 윤리적 행위가치도 포함해야 한다고 보아 법과 윤리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오늘날 형법의 탈윤리화는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형법의 탈윤리화란 불륜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윤리와 법을 구분하여 윤리의 법적인 강행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 형법에서는 구체적으로 간통죄와 낙태죄에 관한 규정이 이에 해당하므로 여기에서는 법과 윤리의 구분에 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상 두 가지 범죄에 대한 처벌 여부를 제시하고 그에 관한 반응을 조사하였다.

형법과 윤리와의 구분에 대한 의식을 알아 보기 위하여 "태아를 낙태시키는 행위는 개인의 양심에 맡길 일이지 법이 처벌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그에 대한 의식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2.98, 여자학생집단이 2.96, 남자소년원생집단이 3.34, 여자소년원생집단이 3.50이며, F=4.60으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했다(P<.01).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원생-남/학생-여, 원생-남/학생-남, 원생-여/학생-여, 원생-여/학생-남 집단간에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소년원생들은 낙태행위에 대한 처벌이 법을 넘어선 윤리의 문제로 보고 있는 반면, 학생들은 형법의 탈윤리화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역시 보수적인 형벌관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형법의 탈윤리화에 대한 의식을 알아 보기 위하여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사생활이므로 법이 처벌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그에 대한 의식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2.76, 여자학생집단이 2.36, 남자소년원생집단이 3.46, 여자소년원

생집단이 3.26이며, F=22.12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매우 유의했다(P<.000). 사후검사로 Duncan 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생-남/학생-여, 원생-여/학생-여, 원생-여/학생-남, 원생-남/학생-여, 원생-남/학생-남 집단간에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소년원생들은 간통행위에 대한 처벌 역시 법을 넘어선 윤리의 문제로 보고 있는 반면, 학생들은 이러한 견해에 반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여학생이 가장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년원생보다는 학생이, 학생중에서는 여자가 더욱 보수적인 형벌관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비범죄화에 관한 의식

비범죄화란 종래 범죄로 취급되던 일정한 인간 행태에 관하여 형사정책상의 변화가 옴으로써 국가 형벌권 행사의 범위를 축소시킬 의도로 일정한 형사제재 규정을 폐지하거나 사실상 적용하지 않거나 또는 형사제재를 가볍게 하려는 모든 시도를 의미한다(임웅,1990 : 188). 비범죄화 이론은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제시하자는 것으로 비범죄화의 대상에는 간통죄,낙태죄,도박죄,약물사용 등의 피해자 없는 범죄들과 법익 침해 내지 침해 위험성이 경미한 소위 경미범죄가 포함된다.

피해자 없는 범죄란 누구에 대하여도 그 범죄를 신고해야 한다고 느낄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는 감정을 품게 할 수 없는 범죄를 일컫는다. 간통죄와 낙태죄는 형법의 탈윤리화와도 관련해 그 한계가 지적되었지만 또한 피해자 없는 범죄에도 해당되며, 도박의 경우 사기가 아니라면 국가가 관여할 이유가 없고, 약물사용도 약물의 제조나 유통이 아닌 자기사용을 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이마리,1991 : 67~69).

경미범죄란 범죄를 그의 경중에 따라 분류하여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받는 가벼운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형법은 이러한 분류를 하고 있지 않고 단지 경범죄처벌법에서 경범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경범죄란 범죄를 그의 경중에 따라 분류하는 입장에서 구류 내지 과료 등의 가벼운 형벌을 법정형으로 하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말한다(稻田輝明,木谷明,1988 : 1). 독일,미국,프랑스 등에서는 이러한 범죄를 질서위반법이라고 하여 형법과 따로 구분짓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경범죄가 형 법전의 형명에 속하는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되므로 형식적으로는 형법상의 범죄라고 할 수 있다(조병선,1991 : 287~288). 경범죄처벌법이 형식적으로 형법에 속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면에서는 다른 형법 법규들과 비교해 볼 때, 법익 침해 위험성이 작고, 책임 비난의 정도가 미미하며, 처벌에 대한 사회윤리적 비난성도 약하다는 점에서 양적으로 구별되는 차이가 있다.

이상 피해자 없는 범죄와 경미범죄에 대한 의식을 알아 보기 위하여 피해자 없는 범죄로는 도박죄와 약물사용죄를 제시하여 그 반응을 조사하였고, 경미범죄로는 경범죄처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54개의 범죄 중에서 비교적 현재 우리 사회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고, 또 누구나 한번쯤은 해볼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3] 22개 경범죄를 선정하여 제시하고 각 문항에 대하여 경미범죄의 보편성, 허용성, 처벌 여부에 관한 반응을 조사하였다.

3)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임웅(1990),「경미범죄의 비범죄화」, 형사정책연구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156에 제시되어 있는 경미범죄의 특수성을 참고하였다.

가. 피해자 없는 범죄에 관한 의식

피해자없는 범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의식을 알아 보기 위하여 "마약, 본드 등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므로 법이 처벌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그에 대한 의식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1.81, 여자학생집단이 1.60, 남자소년원생집단이 2.99, 여자소년원생집단이 3.34이며, F=66.27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매우 유의했다(P<.000).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원생-남/학생-여, 원생-남/학생-남, 원생-여/학생-여, 원생-여/학생-남, 원생-여/원생-남 집단간에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약물사용의 비범죄화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경우 극히 부정적인 입장인 반면, 남자원생은 중립적이고, 여자원생은 다소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약물사용에 대해 극히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난 것은 마약의 폐해에 대한 매스컴의 대대적인 홍보에 따라 약물사용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문항에 거부반응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피해자 없는 범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의식을 알아 보기 위하여 "도박을 하는 행위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므로 법이 처벌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그에 대한 의식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2.18, 여자학생집단이 1.86, 남자소년원생집단이 2.97, 여자소년원생집단이 3.21이며, F=41.77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매우 유의했다(P<.000).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생-남/학생-여, 원생-남/학생-여, 원생-남/학생-남, 원생-여/학생-여, 원생-여/학생-남 집단간에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도박행위의 비범죄화에 대해서는 소년원생들은 비교적 중립적인 반면, 남자학생은 다소 부정적이고, 여자학생은 극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박행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난 것은 도박의 폐해를 다룬 매스컴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도박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문항에 거부반응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형벌의 윤리적인 기능을 배제하고자 하는 탈윤리화 및 피해자 없는 범죄에 대한 비범죄화에 관한 의식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소년원생 집단들이 이에 찬성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학생 집단들은 매우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분석해 볼 때, 진보적인 형벌관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범죄행위에 허용적일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학생 집단의 보수적인 성향은 선행조사에서 나타난 우리 국민 일반의 법의식[4]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형법의 탈윤리화, 비범죄화를 내세워 간통죄나 낙태죄 등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직 시기상조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년원생들의 진보적인 형벌관과 그들의 비행간의 상관관계를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며, 법이 반드시 일반인의 의식만을 좇아가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형벌 기능의 탈윤리화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나. 경미범죄에 관한 의식

4)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5%가 낙태를 법으로 금지해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4%가 간통죄를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경미범죄의 보편성에 관한 의식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중에서 경미범죄의 기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22개의 범죄를 선별하여 그러한 행위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거나 또는 누구나 한번쯤은 해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에 대한 의식을 알아본 결과 총점 22점에 대하여 각 집단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14.63, 여자학생집단이 15.83, 남자소년원생집단이 13.16, 여자소년원생집단이 12.59이며, F=10.75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매우 유의했다(P<.000).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생-남/원생-여, 학생-남/원생-남, 학생-여/원생-여, 학생-여/원생-남, 학생-여/학생-남 집단간에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여자학생은 제시한 22개의 범죄행위 중에서 약15개가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아 가장 많은 수를 응답했고, 남자학생은 약14개, 남자원생은 약13개, 여자원생은 약12개라고 응답했다. 따라서 제시된 행위들중의 절반 이상이 흔히 발생하고 있거나 또는 누구나 한번쯤은 해볼 수 있는 경미범죄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각 범죄행위의 보편성에 관한 의식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남자학생의 경우는 장난전화나 편지(90.8%)의 보편성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여자학생은 허위광고(90.9%), 남자원생은 장난전화나 편지(81.1%), 여자원생은 오물방치(78.5%)가 가장 높았다.

〈표 2〉 경미범죄의 보편성에 관한 의식

경미범죄유형	학생-남	학생-여	원생-남	원생-여	X^2
빈집잠입	64.3	69.4	77.0	77.2	8.27*
허위신고	71.3	79.1	67.6	53.8	17.97***
관명사칭 등	76.8	80.6	66.7	62.0	14.75**
허위광고	84.3	90.9	68.5	58.2	49.51***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64.9	77.0	48.6	44.3	40.08***
광고물 무단부착	76.8	81.7	66.0	41.8	47.95***
음용수 사용방해	60.0	61.5	38.5	35.9	30.38***
단체가입강요	48.1	43.0	38.8	50.6	4.29
노상방뇨	54.1	58.8	43.2	45.6	9.63*
음주교란	89.2	89.3	76.9	74.7	18.51***
물건던지기 등 위험행위	61.1	64.0	59.9	51.9	3.43
미신요법	54.6	75.8	49.3	53.8	29.81***
위해동물 관리소홀	45.1	39.6	35.4	34.6	4.24
장난전화 등	90.8	89.8	81.1	74.7	17.19***
암표매매	68.6	79.7	62.3	62.8	14.44**
비밀춤교습	50.3	66.3	54.7	51.9	11.11*
새치기	83.7	87.2	81.0	76.9	4.87
물품강매 호객행위	58.9	58.6	52.0	64.1	3.43
덮개없는 음식물판매	66.5	77.5	70.1	64.1	7.44
오물방치	89.2	90.4	79.7	78.5	12.91**
자연훼손	68.6	70.6	59.2	59.0	7.02
불안감조성	44.3	55.6	46.6	49.4	5.23

* $P < .05$ ** $P < .01$ *** $P < .001$

(2)경미범죄의 허용성에 관한 의식

경범죄처벌법에서 선별한 22개의 범죄 행위중에서 전에 해본 적이 있거나 앞으로 해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는지에 대한 의식을 알아본 결과 총점 22점에 대하여 각 집단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6.63, 여자학생집단이 5.62, 남자소년원생집단이 9.27, 여자소년원생집단이 8.72이며, F=21.55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매우 유의했다(P<.000).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생-남/학생-여, 원생-여/학생-여, 원생-여/학생-남, 원생-남/학생-여, 원생-남/학생-남 집단간에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남자원생은 제시한 22개의 범죄행위 중에서 약9개를 경험했거나 할 수 있으리라고 보아 가장 많은 수를 응답했고, 여자원생은 약8개, 남자학생은 약6개, 여자학생은 약5개라고 응답했다. 따라서 제시된 행위에 대한 응답자 자신의 허용성은 역시 학생보다는 원생들이 높고, 학생중에서는 남자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각 범죄행위의 허용성에 관한 의식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지지율이 높은 1~3위의 행위에 있어서는 집단별로 의식의 차이가 없었는데, 첫째는 휴지,담배꽁초,쓰레기 등의 오물을 함부로 버리는 것이고, 둘째는 장난전화나 편지, 셋째는 극장이나 정류장에서의 새치기였다. 그러나 빈집잠입, 허위신고,불안감조성 등 비교적 지지율이 낮은 행위에 있어서는 학생들에 비해 원생들의 지지율이 높아 의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 경미범죄의 허용성에 관한 의식

경미범죄유형	학생-남	학생-여	원생-남	원생-여	X^2
빈집잠입	25.9	12.3	64.9	55.7	121.54***
허위신고	24.3	11.8	40.5	29.1	37.24***
관명사칭 등	40.0	28.9	39.7	40.5	6.86
허위광고	28.6	34.2	33.8	32.9	1.60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12.4	8.6	17.7	19.0	8.39*
광고물 무단부착	23.2	24.1	24.5	25.3	.15
음용수 사용방해	24.9	12.3	27.7	32.9	18.82***
단체가입강요	15.1	11.2	26.4	29.1	19.87***
노상방뇨	34.6	9.6	46.6	36.7	59.93***
음주교란	40.5	27.8	62.8	59.5	49.59***
물건던지기 등 위험행위	42.7	39.6	58.8	48.1	13.73**
미신요법	13.0	21.4	27.0	26.6	11.97**
위해동물 관리소홀	21.6	16.0	33.8	27.8	15.57**
장난전화 등	64.9	70.1	75.7	72.2	4.77
암표매매	19.5	19.3	23.0	26.6	2.40
비밀춤교습	10.8	8.6	21.6	24.1	19.20***
새치기	62.2	65.2	71.6	59.5	4.56
물품강매 호객행위	11.9	14.4	27.0	32.9	24.52***
덮개없는 음식물판매	15.7	17.1	33.1	32.9	22.35***
오물방치	77.3	70.1	83.1	73.4	8.17*
자연훼손	45.4	33.7	48.6	49.4	10.27*
불안감조성	12.4	5.9	39.3	38.0	80.66***

* P < .05 ** P < .01 *** P < .001

(3)경미범죄의 처벌여부에 관한 의식

경범죄처벌법에서 선별한 22개의 행위가 형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인지에 대한 의식을 알아본 결과 총점 22점에 대하여 각 집단의 평균은 남자학생집단이 13.24, 여자학생집단이 13.73, 남자소년원생집단이 10.47, 여자소년원생집단이 10.54이며, F=18.01로서 집단간의 차이는 매우 유의했다(P<.000). 사후검사로 Duncan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생-남/원생-남, 학생-남/원생-여, 학생-여/원생-남, 학생-여/원생-여 집단간에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 남·여 집단은 제시한 22개의 범죄행위 중에서 약13개를 형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로 생각한다고 응답했고, 원생 남·여 집단은 약10개라고 응답했다. 따라서 제시된 행위에 대한 처벌여부는 역시 원생보다는 학생들이 엄격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의식조차도 13개 행위 외에는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들중에서 일부는 비범죄화되어야 할 만큼 경미한 범죄임을 시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범죄행위의 처벌여부에 관한 의식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형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로서 각 집단별 지지율이 가장 높은 행위는 길을 막고 거친 행동을 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었고, 지지율이 가장 낮은 것은 남자학생의 경우 새치기(31.2%), 여자학생은 미신요법(31.6), 남자소년원생은 새치기(27.2%), 여자소년원생도 새치기(32.9%)였다. 집단간의 의식의 차이

〈표 4〉 경미범죄의 처벌여부에 관한 의식

경미범죄유형	학생-남	학생-여	원생-남	원생-여	X^2
빈집잠입	64.5	58.8	61.5	51.9	3.96
허위신고	60.2	73.3	39.9	51.9	39.48***
관명사칭 등	36.6	33.7	43.9	39.2	3.89
허위광고	60.2	70.6	58.1	49.4	12.28**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69.4	79.7	64.2	60.8	14.00**
광고물 무단부착	59.1	51.9	37.8	48.1	15.34**
음용수 사용방해	82.8	93.0	73.6	59.5	46.30***
단체가입강요	67.2	57.8	61.5	45.6	11.40**
노상방뇨	59.1	70.1	41.9	38.5	37.31***
음주교란	38.7	42.2	31.8	32.9	4.70
물건던지기 등 위험행위	65.6	53.5	48.0	54.4	11.37**
미신요법	40.3	31.6	32.4	36.7	3.80
위해동물 관리소홀	60.8	66.8	45.9	50.6	17.10***
장난전화 등	40.9	54.0	31.8	40.5	17.43***
암표매매	76.9	72.2	56.1	46.8	32.55***
비밀춤교습	75.8	70.6	58.8	60.8	3.46**
새치기	31.2	38.0	27.2	32.9	4.57
물품강매 호객행위	67.7	56.7	52.7	44.3	15.05**
덮개없는 음식물판매	47.8	46.0	29.1	44.3	14.16**
오물방치	61.3	81.3	33.8	51.9	79.58***
자연훼손	72.6	79.7	45.3	48.1	57.51***
불안감조성	85.5	92.5	72.3	65.8	38.68***

* P < .05 ** P < .01 *** P < .001

가 큰 행위는 허위신고, 음용수 사용방해, 노상방뇨, 위해동물 관리소홀, 암표매매, 오물방치, 자연훼손, 불안감조성 등으로 원생에 비해 학생의 지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행위들이다. 특기할 만한 것은 오물방치의 경우 보편성 및 허용성에 대한 학생들의 지지율이 높았고, 자연훼손의 경우는 보편성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난 것은 최근 학교 및 매스컴을 통한 환경교육의 효과로 환경의식이 높아진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3. 사형존폐에 관한 의식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고, 사회로 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형벌이다(신진규,1989 : 560). 사형의 형사정책적 의의는 그것이 형사 책임으로서 가장 중하다는 것을 사회일반인에게 알리는 동시에 범죄인을 영구히 격리시킴으로써 국가 사회를 방위하려는데 있다고 한다(정영석,1987 : 241). 그러나 실제에 있어 사형이 그러한 효과를 가지는지와 관련하여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와 존치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사형폐지론의 논거는 첫째, 사형은 사회 방위를 위해 인간을 희생시키는 제도로서 인간을 국가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이므로 헌법 제 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며, 둘째, 사형은 인간의 존재 근거인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이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최석윤,1993 : 20-21). 셋째, 사형은 무고한 시민에 대해 집행된 경우에도 회복할 수 없는 형벌이며, 넷째, 형벌의 목적을 개선과 교육에 있다고 볼 때 사형은 전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다섯째, 사형은 일반인이 기대하는 것과 같은 위하적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김일수,1991 : 561).

사형존치론의 논거는 첫째, 사람을 살해한 자의 생명을 박탈해야 된다는 것은 아직까지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는 법적 확신이고, 둘째, 극악한 사람은 사회에 유해하므로 사회 방위를 위해 이 사회로 부터 완전히 말살해야 한다는 것이다(정영석,1987 : 243). 셋째, 생명은 인간이 가장 애착을 느끼는 것이므로 사형의 예고는 범죄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가진다는 것이다(김일수, 1991 : 562).

사형존폐의 문제는 각국의 현실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세계 각국이 점차 사형을 폐지하고 있고, 존치하더라도 거의 집행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형사정책상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형제도의 폐지 여부에 관한 의식을 묻고, 찬반에 따른 각각의 이유를 조사하였다.

사형제도에 관한 의식을 알아 보기 위하여 사형제도의 폐지여부에 관해 조사한 결과, 학생 남·여는 각각 50.3%와 65.2%로 반대가 많았고, 원생 남·여는 각각 77.9%와 67.5%로 찬성이 많았다. 각 집단내에서는 여자보다는 남자의 찬성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사형제도에 대한 의식은 소년원생들의 대부분이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남자학생은 찬반이 비슷한 수준이고, 여자학생은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앞에서 살펴본 다른 형벌이론에 대한 의식의 경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사형폐지론에 찬성하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는 집단간에 별 차이 없이 범죄자에 대한 개선 기회 박탈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법

관의 오판가능성, 인간의 생명권 침해, 마지막이 인간의 존엄권 침해로 사형폐지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범죄자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자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사형제도를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살펴본 결과는 집단간에 차이가 있어, 남자학생의 경우는 범죄인에 대한 응보(35.1%)와 일반인 및 범죄인에 대한 위하(35.1%)가 주요 이유이나 여자학생의 경우는 절반 이상(53.3%)이 범죄인에 대한 응보를 위해 사형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원생 남·여 집단은 사형제도 존치의 이유로 범죄인에 대한 응보 보다는 위하나 사회방위적 기능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Ⅵ. 결 론

이 연구는 청소년들이 범죄와 형벌에 관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 것으로 조사대상자인 청소년집단을 학생 남자와 여자, 소년원생 남자와 여자의 4개 집단으로 나누어 그 의식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조사 결과 나타난 청소년들의 범죄와 형벌에 관한 의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범죄를 법을 어기는 행위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를 미치는 행위라고 보고 있으며, 더 나아가 비양심적인 행위까지도 범죄로 보아야 한다는 보수적인 범죄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범죄를 계층간의 갈등의 소산이라고 보는 급진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그러한 보수적인 성향은 소년원생보다는 학생의 경우 더 강하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사회변화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는 사회적인 규정으로 보는 데는 비교적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범죄의 개념을 다원적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범죄상황이 일반적으로 볼 때, 양적, 질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나, 그 중에서도 특히 질적으로 흉포화 되고 있으며, 성인범죄보다도 청소년범죄가 더욱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셋째,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형벌의 본질에 관해서는 일반사회인에 대한 위하보다는 범죄자의 개선을, 범죄자의 개선보다는 응보에 대한 지지도가 더욱 높게 나타나므로써 학생집단의 형벌관이 매우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형벌의 한계에 관하여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법적인 처벌 및 피해자 없는 범죄에 대한 처벌에 관해 긍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어 탈윤리화 및 비범죄화에 대체로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제시한 경범죄의 절반 이상에 대해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행위라고 파악하고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허용성도 높아 이들 범죄를 비범죄화하는 것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학생보다도 소년원생의 경우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형폐지에 대해서는 소년원생들의 대부분이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남자학생은 찬반이 비슷한 수준이고, 여자학생은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형폐지에 찬성하는 경우는 범죄자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나, 반대하는 경우는 학생들이 범죄인에 대한 응보를 그 이유로 들고 있는 반면, 소년원생들은 응보 보다는 위하(威嚇)나 사회방위적 기능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조사대상 청

소년중에서 학생의 경우 계급적인 범죄관을 부정하고 있고, 형벌의 본질이 응보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형법의 한계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윤리적인 문제나 피해자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형벌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보며, 사형폐지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 편으로 매우 보수적인 범죄관 및 형벌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학생 중에서도 여학생의 경우 더욱 두드러 진다. 반면에 소년원생의 경우는는 계급적인 범죄관을 가지고 있고, 형법의 탈윤리화 및 비범죄화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사형폐지에도 대부분 찬성하고 있어, 학생에 비해 진보적인 때로는 급진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학생과 소년원생간의 이러한 의식의 차이를 두고 볼 때, 진보적인 범죄관 및 형벌관을 갖고 있는 경우 자신의 범죄나 비행 행위에 대해서도 허용적일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소년원생들의 경우 교정교육을 통해 범죄와 형벌에 관해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관을 확립시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보수적인 범죄관이 바람직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보수적인 법감정을 가지고 범죄문제에 대처할 경우 범죄자들의 소외감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오히려 인간과 사회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 일으켜 범죄행태가 더욱 흉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범죄와 형벌에 대한 생각이 보수적이거나 급진적인 경향으로 치우치지 않고 가치중립적인 의식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그러한 의식을 가지려면 먼저 기성세대들의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하겠지만, 제도적인 방안으로는 그들에게 올바른 법의식 및 법태도를 길러줄 수 있는 법교육의 실시와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의 개발을 들 수 있다.

현재 학교에서의 법교육은 사회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형법을 비롯해 법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이 단순화된 지식 위주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법에 대한 가치나 태도를 길러 주기 보다는 법지식의 전달에 치중하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 나타난 바와 같은 학생과 소년원생간의 의식의 차이는 이러한 지식 위주의 법교육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므로, 범죄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하거나, 범죄인의 입장이 되어 보는 역할놀이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법률문제를 생활화하고 범죄자들에 대한 바른 태도를 길러줄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과 청소년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범죄 및 범죄자의 문제가 나와 동떨어진 문제라고 생각하여 그들에 대해 지나친 엄벌주의를 취하게 하기보다는 범죄자들도 우리와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인도주의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은 소년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로서, 교육제도 개선과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통해 미래 사회의 주인인 청소년들의 의식 전환이 이루어져야만 장기적인 범죄대책으로서 장차 범죄자들이 사회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을 버리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교육부. 1991.「고등학교 정치 경제 교사용지도서」, 교육부.

김상희 · 조병인. 1991.「수사경찰의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옥철. 1987.「소년범 재범방지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일수. 1991.「형법총론」, 박영사.

김준호 외3인. 1991.「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문화체육부. 1993.「청소년백서」, 문화체육부.

박성혁. 1992. 초 · 중 · 고생의 법태도 발달과 법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재윤. 1992.「교정공무원의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진규. 1989.「범죄학 겸 형사정책」, 법문사.

심영희 외3인. 1991.「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_____. 1991.「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오재환. 1991.「피해자학의 위치와 전망」, 형사정책연구 제8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마리. 1991.「형법의 한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수성. 1984.「한국청소년의 법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법학 제58 59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_____. 1990.「우리사회의 범죄상황과 범죄대책의 기본방향」, 형사정책연구 창간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수성 · 조준현. 1989.「형사정책」한국방송통신대학.

이재상. 1994.「한국의 범죄동향과 그 대책」, 형사정책연구 제17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_____. 1994.「형법각론」, 박영사.

_____. 1994.「형법총론」, 박영사.

임 웅. 1990.「경미범죄의 비범죄화」, 형사정책연구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덕장. 1994.「경범죄처벌법」, 법원사.

정영석. 1987.「형법총론」, 법문사.

_____. 1987.「형사정책」, 법문사.

조병선. 1991.「질서위반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진계호. 1987.「형벌의 본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차용석. 1993.「형벌권 남용으로부터의 자유」, 교육과학사.

최석윤. 1993.「사형이 정당한 국가형벌일 수 있는가?」, 형사정책연구소식 제15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인섭 · 김효정. 1991.「경찰에 대한 시민의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인화. 1992.「법교육과정의 적정성탐색」,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종고. 1993.「법과 윤리」, 경세원.

한기찬. 1993.「형법에의 초대」, 김영사.

金척文雄. 1984. 刑法とモラル, 一粒社.

吉川經夫 外12人. 1978. 刑事政策講義, 青林書院新社.

內田文昭. 1990. 犯罪概念と犯罪論の體系 信山社.

大塚仁. 1988. 犯罪論の基本問題, 有비閣.

稻田輝明. 木谷明. 1988. "輕犯罪法", 註解特別刑

法 7, 青林書院.
森下忠. 1988. 犯罪者處遇論の課題, 成文堂.
小野清一郎. 1954. 刑罰の本質について, その他, 有비閣.
伊藤榮樹. 1982. 輕犯罪法, 立花書房.
村井敏邦. 1990. 刑法-現代の犯罪と刑罰, 岩波書店.
夏目文雄. 上野達彦. 1992. 犯罪槪說, 敬文堂.
Comfort, Alex. 1988, Authority and Delinquency, London : Zwan Publications, Inc.
Cremona,Marise. 1989. Criminal law, London : MacMillan Education LTD.
Davis, Michael 1985, 'How to make the punishment fit the crime", Criminal justice nomos 27, New York University Press.
Foucault, Michel 1993, 박홍규 역, 감시와 처벌, 강원대학교 출판부.
Heidensohn, Frances. 1989. Crime and society, London : MacMillan Education LTD.
Liska, Allen E. 1988. 장상희 외2인 역, 일탈의 사회학, 경문사.
Pollock-Byme, Joycelyn M. 1989. Ethics in crime and justice, Belmont : Brooks/Cole Publishing Co.
Taylor, Lawrence. 1992. 홍성열,임영식 역, 범죄행동은 유전적인가?, 성원사.
Thomas, Charles W., Bishop, Donna M. 1987, Criminal law, Newbury Park : Sage Publications,Inc.